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중 3명(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11명(5급 1명, 6급 4명, 7급 6명)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상호금융업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11. ~ 3.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한시정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264”를 “271”로 하고, 일반직 계 “262”를 “26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37”을 “244”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1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자본시장국 1개 과	3명

[별표 5]

금융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4조 관련)

제24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3월 31일)

총계	11
일반직 계	11
5급 이하	1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u>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u>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u>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u>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u><신설></u>	제24조(한시정원) <u>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u>

	<u>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 회에 둔다.</u>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64</u>		<u>271</u>	+7	
		•	•		•		
		•	•		•		
일	반	직 계	<u>262</u>		<u>269</u>	+7	
		•	•		•		
		•	•		•		
3	급	또는 4급 이하	<u>237</u>		<u>244</u>	+7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1